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7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서천호 · 박충권 · 이만희
조은희 · 김승수 · 이달희
서지영 · 강대식 · 박수영
정동만 · 김은혜 · 엄태영
강명구 · 김용태 · 백종현
이종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

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도입하는”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운영에”를 “운영 및 운용 기준에”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산림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운영 및 운용 기준
에-----
-----.